

〈수시 공시〉

2018. 8. 3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(수시공시의 방법 등)제 3 항 제 5 호에 의거하여, 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이며,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(투자신탁의 해지)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해당 집합투자기구 및 내역

(단위:원)

발생일자	펀드명	설정잔액	순자산총액	기준가격
2018. 8. 3.	신영아이젠60증권투자신탁(주식혼합)	4,601,786,293	4,645,117,992	1009.42

* 50억미만 시작일 : 2018년 7월 3일

2. 공시 사유 : 소규모 펀드(1개월) 여부 공시

3.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www.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